

골판지包裝 · 物流産業政策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中小企業關係法 改正案 確定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賣促進法』으로 立法豫告後 意見聚合거처 政府案으로 定期國會 提出

상공자원부에서는 1966년 개정 이래 현재까지 3차에 걸친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던 중소기업 기본법의 개정과 94. 12.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 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 등을 통합 개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정비와 중소기업육성을 보호와 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체제로 바꾸어, WTO체제에 적정한 대응지원시책을 반영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자립유도와 국제 경쟁 자력배양을 위하여 현재 8개로 되어있는 중소기업관계법을 5개로 통합개정하는 작업이 금 94년 5월부터 본격화되어 94. 5. 12일 공청토론회와 94. 7. 21일자로 상공자원부 공고 1994 - 68호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 - 69호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 상공자원부 공고 1994 - 70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동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 - 71호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한후, 94. 9. 15일 07 : 00 에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대표들과 상공자원부와의 중소기업 당면과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층토론을 거쳐, 동 중소기업관련 현행제도 및 법률 개편안을 최종확정 하였다.

금번의 중소기업관계법 개정안중 쟁점의 초점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 그 법명이 없어지고 중소기업진흥법에 흡수 통합되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약화되는 문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축소 및 대기업의 고유업종이외의 중소기업 영위시의 사업조정을 대기업자가 속해있는 경제단체(한국경제인연합회)를 참여케한 민간자율 사업조정위원회는 가해자가 분쟁조정을 한다는 모순 등 3가지가 부각 되었다.

이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와 중소기업간에 지난 9월 15일의 간담회에서 결의한 중소기업관계법 개정 소위원회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타협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것이다.

다음에, 당초 상공자원부의 중소기업관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9월15일 상공자원부와 중소기업간에 협의한 수정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관계법 개정 소위원회의 협의결과

1. 중소기업진흥법의 명칭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칭한다.
2.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와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명칭은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제4장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를 제2장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내린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9조 (구매의 증대)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정리한다.
 - ①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 지명경쟁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 4.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와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9조(사업조정)은 현행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제8조(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간의 사업조정 등)를 그대로 유지(단체의 사전 자율조정 규정삭제) 한다.

산업표준화법 운영요강 개정고시 조합을 단체표준 인증기관에 지정케

공업진흥청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공업진흥청 고시 제 1994-617호, 94. 9. 10)을 개정 고시하였다.

동 운영요강에 따르면 KS표시허가 제도 및 사후관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특히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승인절차, 제정범위, 단체표준 품질 인증단체의 지정기준등을 규정하였는데, 산업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그 규격안을 공업진흥청이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생산업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체표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표준화법,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소비자보호, 공산품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이나, 한국산업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이 그 수준을 상회하는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직접 검사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시험기관과의 사용계약으로 단체표준 품질인증 단체로 지정 받을 수가 있다.

단체표준을 승인 받은 단체가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에 대하여 승인된 단체 표준에 맞는것임을 나타

내는 품질인증 업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단체지정 신청서와 단체표준품질 인증표시 규정등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단체지정을 받을수 있다.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관한 94년도 귀속 소득표준률 조정 건의 실적치와 격차 심 · 제품간도 불합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현기)은 지난9월 26일 국세청장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관한 94년도 귀속 소득표준률을 실적치에 부합되게, 그리고 완제품과 반제품간의 표준률도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동 건의서에 의하면 현행 소득표준률은 210210골판지제조업은 일반 기본 8.9, 차등 7.1,자가 기본 9.1 차등 7.2, 210241 골판지상자 제조업(제조 또는 구입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 전부해당 ; 국세청장 유권해석 소득 46215 - 268, 1993. 8. 28)은 일반 기본 8.4, 차등 6.7, 자가기본 8.6, 차등 6.8은 골판지포장산업의 경영실태가

첫째 골판지포장산업은 자동화, 고속화시설로 장치 산업화 되고 있어 감가 상각비가 고을 이며, 부피산업성 및 교통체증에 따른 수송회

둘째 운송비는 준율의 저하, 운송인건비 폭증으로 원가점유비가 8%로 매우 높으며,

셋째 국세청 적용 93년도 소득표준율에 의하면 직물과 양복, 원목과 목재, 제제와 목재가공 등 반제품과 완제품의 소득표준률은 각각 9.5:13.7 으로 후자인 완제품의 소득표준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골판지(반제품)와 골판지상자(완제품)의 경우는 일반기본 8.9 : 8.4, 자가기본9.1 : 8.6으로 반제품이 높게 책정되고 있어, 형평에 반하는 모순인점을 들어 이를 실적치에 가깝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것을 건의 하였다.

동 건의서의 요점은 다음표와 같다.

94년 귀속 소득 표준률 조정 조치 건의서

(표준소득업종 분류 :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0210 골판지
210241 골판지상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1. 현 행					2. 문 제 점																										
<p>○ 소득 표준율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 colspan="2">일 반</th> <th colspan="2">자 가</th> </tr> <tr> <th>코드번호</th> <th>기본</th> <th>차등</th> <th>기본</th> <th>차등</th> </tr> </thead> <tbody> <tr> <td>210210</td> <td>8.9</td> <td>7.1</td> <td>9.1</td> <td>7.2</td> </tr> <tr> <td>210241</td> <td>8.4</td> <td>6.7</td> <td>8.6</td> <td>6.8</td> </tr> </tbody> </table>						일 반		자 가		코드번호	기본	차등	기본	차등	210210	8.9	7.1	9.1	7.2	210241	8.4	6.7	8.6	6.8	<p>1. 골판지 포장제조업의 가격상 특성 ① 원자재 점유비가 70%이상 고율로서 저부가 가치 산업특성 있음. ② 품질, 차별성 없는 무브랜드성의 가격 경쟁 특성 있음. ③ 부피가 커 제품가격 대비 운반비 고율임</p> <p>2. 자동화, 고속화, Computer화에 따른 장치산업이며, 고가기계 설치로 시설 투자 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대일로임.</p> <p>3. 현행 골판지포장산업에 대한 소득 표준율은 반제품 소득표준 산업분류 코드 210210이 완제품 소득표준사업 분류코드 210241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모순임. 동일내용인 직조 직물과 양복, 목재 제재, 합판과 가구 등 경우 양복 등 완제품이 직조직물등 반제품 보다 소득 표준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p>						
	일 반		자 가																												
코드번호	기본	차등	기본	차등																											
210210	8.9	7.1	9.1	7.2																											
210241	8.4	6.7	8.6	6.8																											
3. 조정 조치 건의 내용					4. 조 정 사 유																										
<p>○ 소득 표준율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코 드 번 호</th> <th colspan="2">일 반</th> <th colspan="2">자 가</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본</th> <th>차등</th> <th>기본</th> <th>차등</th> </tr> </thead> <tbody> <tr> <td>210210</td> <td>6.6</td> <td>5.3</td> <td>6.8</td> <td>5.4</td> <td>골판지 (반제품)</td> </tr> <tr> <td>210241</td> <td>7.1</td> <td>5.6</td> <td>7.3</td> <td>5.8</td> <td>제조 또는 구입한 골판지로 판지상자 제조 (완제품)</td> </tr> </tbody> </table>					코 드 번 호	일 반		자 가		비 고	기본	차등	기본	차등	210210	6.6	5.3	6.8	5.4	골판지 (반제품)	210241	7.1	5.6	7.3	5.8	제조 또는 구입한 골판지로 판지상자 제조 (완제품)	<p>1. 골판지 포장제품은 저부가 가치성, 운송비고율성, 자동화에 따른 감가상각비 격증성을 감안 현행 소득표준율에서 반제품의 경우 15% 인하 조정함이 상당함.</p> <p>2. 골판지 포장제조업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분류는 210210에는 골판지 제조만을 : 210241에는 제조 또는 구입한 골판지를 불문하고 최종 제품인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소득 표준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 46215-2568, 1993. 8. 28)으로 되어 있으므로 목재 합판과 가구, 직조직물과 양복과 같이 중간제품인 210210세율은 완제품인 210241보다 저율 적용이 타당, 형평원칙에 합당함.</p> <p>3. 공단행 소득표준율은 높게 책정되어 업계 실적차와 편차가 심함.</p>				
코 드 번 호	일 반		자 가			비 고																									
	기본	차등	기본	차등																											
210210	6.6	5.3	6.8	5.4	골판지 (반제품)																										
210241	7.1	5.6	7.3	5.8	제조 또는 구입한 골판지로 판지상자 제조 (완제품)																										

中小企業固有業種 골판紙 및 골판紙箱子 製造業

1998年 以後에도 解除留保 繼續存置

大企業 自社그룹 内部供給獨占이 理由

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은 고유업종으로 계속 존치해야하는 근거와 사유에 관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고유업종 검토자료(Ⅰ) 및 (Ⅱ) 전문을 다음에 소개하여 둔다. <(Ⅰ)은 전호(94. 8월 제2호)게재 (Ⅱ)는 본호게재 계속임>

중소기업 고유업종별 경쟁력실태 점검자료(Ⅱ)

품목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34193116-34121112 1992. 3. 10 작성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1. 산업 및 제품의 특성	생산공정의 단순성	소량 다품종 업종 여부	규모의 경제성
	1. 원가구성상 원자재 점유비 70%점유 2. 생산과정: 원자재(라이너, 골심지) → 골성형 → 접착 → 건조 → 절단 → 제품	주문생산특성 및 포장 상품마다 치수 크기가 달라 다품종, 소량, 다규격품임	골판지는 골판지상자 제조공정에 불과하며 가공업이므로 규모의 경제성은 미미함
	노동집약도(자본집약도)	시장규모, 업체수	경쟁국 실태
	골판지제조공정은 분리다공정(4공정)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으며, NC화로 감소 추세임	1. 골판지 총시장 규모 22.19억㎡, 6,710억원 2. 골판지 제1차 자가 투입규모 16.42억㎡, 4,965억원 3. 골판지판매 출하규모 5.77억㎡, 1,745억원 4. 골판지상자 일관업 166, 시트 4	1. 경쟁국 대만: 근대화정도는 유사하나 포장품질 대만이 우수 2. 골판지 원단 출하판매: 미국 6.5%, 영국 0% 프랑스 12.3%, 핀란드 2.5% 임

2. 수급상황 및 변화전망	구분		'88	'89	'90	'91	'92(추정)	'93(추정)
	수요	내수	1,365,047.5	1,543,989.6	1,663,258	1,886,920.6	2,113,351	2,240,152
		수출	554,850.5	506,461.4	557,380	544,678.2	610,039.5	646,641.8
		계	1,919,898	2,050,451	2,220,638	2,431,598	2,723,390.5	2,886,793.8
	공급	대	209,947	230,711	217,510	240,348	269,189.7	285,341.1
		중소	1,708,522	1,818,287	2,001,625	2,189,716	2,452,481.9	2,599,630.8
		수입	1,429	1,457	1,503	1,535	1,719.2	1,822.3
		계	1,919,898	2,050,455	2,220,638	2,431,599	2,723,390.8	2,886,794.2

* 1. 본표 수급에는 골판지 제조 제1차자가 투입분과 골판지 원단 판매출하분의 합계임(단위: 천㎡)
2. 수출은 수출포장으로 사용된 간접 수출분임

2. 수급상황 및 변화전망

* 주요생산업체현황('90)

회사명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율	비고 (중소/대기업)
A 사	35,172	29,938	76.59%	중소기업 (본표 골판지 제상자가 투입분과 판매 출하 분포함임)
B 사	35,560	25,265	71.05%	
C 사	32,659	22,890	70.08%	
D 사	12,150	8,165	67.20%	
기타	3,114,657	2,135,965	68.58%	
계	3,230,198	2,220,638	68.75%	

- 업체수: 170 (골판지, 상자일관기업) (중소: 164, 대기업: 6) 대기업은 고유업종 영위 중소기업 포함

3.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 수준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부	KS, 외국규격획득 여부	대기업제품과의 비교
1. 골판지제조 접착제 규산소다에서 진분 접착제로 대체개발 2. 자동차 천정재 골판지 대체개발 3. 저온접착 골판지 제조기술개발 3차년도 추진중(공업기반기술과제)정부출연 4.8억원 민간부담 2.1억원 계 6.86억원	KS 획득업체 중소기업 5개사 (한수, 삼보, 동호, 제일, 동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제조기술이 대차없고(자동화 요인으로) 규모차이가 품질차의 요인이 아니므로 대차 없음
외국제품과의 비교	기술발전추이	
1. 미국 FS, 일본 JIS, 한국 KS 규격 동일함 2. 경쟁국인 대만: 한국 =100:95로 한국의 주원료 원지품질이 떨어짐	1. 공정단순화--노동집약 분리5공정이 3공정, 2공정 기술로 발전(80년대→90년대) 2. 기계조작 수동에서 자동화 COMPUTER화 (80-90년) 3. 고온접착에서 저온접착 (85-95년)	

<p>4. 중소기업 경영상황</p>	<p>1. 골판지 포장공업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문생산성: 골판지 포장공업은 주문생산 특성있음 ② 다종소량 생산성: 다품종 소량 다규격 생산 품입 ③ 무 BRAND성: 골판지포장은 상표, 품질 특성이 없는 무 BRAND 특성있음 ④ 원자재 원가 점유비 고율성: 원가구성상 원자재 점유비가 70% 이상 고율로서 저부가 가치 산업임 ⑤ 부피산업성: 골판지포장은 부피가 큰 산업으로 운임이 많이 드는 지역 분산 분포형 중소기업 형임 ⑥ 단납기성: 골판지포장은 납기 단기성 있음 ⑦ 산업용재성: 골판지포장은 최종소비제품이 아닌 사업자 사용산업용재임 ⑧ 내수산업성: 원칙적으로 전량내수산업임 		<p>2. 골판지포장공업 91년 현재의 경영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속성장시대에서 중·저속성장으로 이행 ② 한국의 산업구조 경공업 위주에서 중공업 서비스 산업에의 급변으로 골판지 포장수요 PATTERN 변화 ③ 대형 골판지포장 공장의 난립 및 기존 공장 시설의 자동화, 고속화 개체에 따른 생산능력 팽배 초과임 ④ 기업수익을 저율('90년 세후 소득율 평균 2.6%) ⑤ 인력난(특히 잡역 인력 부족)에 의한 노무 도산과 3D (Difficult, Dangerows, Dirty) 산업성 해소과제 대두 ⑥ 작업시간 단축 시단 문제 제기 ⑦ 고부가가치 포장재 개발력 부족 ⑧ 원자재 특히 골판지원지 품질의 국제수준 미흡 ⑨ 수송회전율 42.5% 저하로 적체극심(일4회전 → 1.7회전) ⑩ 기업환경 변화적응 전략으로 골판지포장공업 경영 혁신 신품운동 전개필요 ⑪ 자동화, 고속화부진 공장은 인력난으로 생산감소 현저하여 노무도산 우려있음 ⑫ 골판지포장 제조업 생산능력 공급대비 145%로 과당경쟁 격심함 ⑬ 포장재 골판지상자 사용 사업자(포장 END USER)는 기업비용 절감 전략상 "값싸고" "품질 좋고" "신속납품" 요망이 크며, 따라서 골판지에서 상자까지의 일관업자 골판지 상자를 선호하는 추세임 		
<p>5. 대기업의 참여가능성</p>	<p>'87년 이후 참여사례</p>	<p>수요 공급의 독과점 여부</p>	<p>일관공정에의한 생산효율성</p>	<p>참여가능 및 대기업명</p>	<p>* 수입자유화여부</p>
	<p>1. 태광그룹계열 태경물산골판지포장 직영공장(부산, 양산)</p> <p>2. 공법인(농업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북능금조합 직영공장 ② 제주감귤조합 직영공장 ③ 창녕 납지농협 직영공장 	<p>대기업참여 허용되던</p> <p>1. 골판지 포장은 전산업이 사용하는 필수품이므로 대기업 그룹전업체가 자동케이스 수요처이기 때문에 자사 그룹수요를 독점하게 됨</p> <p>2. 골판지포장의 대기업사용 비율이 60%이므로 기업의 수요·공급 독점은 필연적이므로 대기업 참여가능성이 높음</p>	<p>1. 골판지포장제조업은 골판지에서 상자까지 일관생산방식이 세계적인 기본업태임</p> <p>2. 골판지원지로부터의 일관공정은 순수일관공정이 아님</p> <p>3. 골판지를 구입단순제상가공업은 일관기업에 비해서 골판지운송비 및 골판지판매 이윤 이중부담으로 상자가격 고가. 포장품질실계불능, 공장대지 소규모로 대량 LOT 생산불능등 생산효율성 차이있음</p>	<p>참여가능 및 확대가능 대기업 다수있음</p>	<p>1. 골판지포장제품은 전품목 수입자유화 AA 품목임 (HSK) 골판지 : 4808.10.0000 골판지상자: 4819.10.0000</p> <p>2. 관세율 91 → 13% 92 → 11% 93 → 9%</p>

